2026. 10. .

수 신 :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장

제 목 :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**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3부. 끝.

발의자 : 안병건 의원 외 14인
(발의자 및 찬성자 서명 별첨)

안건명 : **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(발의자)

연 번	의 원 명	서 명(날인)	비 고
1	안 병 기		
2	강 신 삼		
3	정 승 구		
4	김 명 희		
5	최 승 숙		
6	강 혜 란		
7	탕 석 빈		
8	이 성 민		
9	신 은 숙		
10	최 금 련		
11	조 계 애		
12	김 명 화		
13	손 혜 영		
14	김 영 찬		
15	권 순 정		

안건명 : **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(찬성자)

연 번	의 원 명	서 명(날인)	비 고
1	오		
2	강		
3	정		
4	김		
5	최		
6	강		
7	황		
8	이		
9	신		
10	차		
11	조		
12	김		
13	송		
14	김		
15	권		